

고온진공스킨포장기 및 부속장비 시방서

1. 적용범위

본 시방서(과업지시서)는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고온진공스킨포장기(물품)장비 구매와 관련하여, 예천축산업협동조합(이하“발주처”)과 공급업체(이하“계약상대자”)가 이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기준

본 시방서(과업지시서)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KS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KS 기준이 없거나 제품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목적, 국내 관련 법규 그리고 축산물 육가공 HACCP설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3. 규격사항

가. 본 물품의 품목별 규격은 별첨 “규격서”에 따른다.

나. 납품 시 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작업을 수행해야 한다.

4. 납품 조건 및 방법

가. 공급 장소 및 물품 내역

품 명	수량	납 품 장 소
고온진공스킨포장기 (부속장비 포함)	1대	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57-1, 예천축협 하나로마트

나. 납품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다. 공급내역: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의한 본체, 액세서리(부속품, 예비품, 소모품, 공구 등)를 신품(중고품 납품 불가)으로 납품하여야 한다.

라. 검 수: 현장 장비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7일 이내 진행

※ 단, 검수 완료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.

마.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제시된 규격서 및 사양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적합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.

바.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제품 규격서 및 사양서를 제시하여야 하며, 제품 납품 시 제품 규격서 및 사양서와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사. 검사 및 검수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5. 기기 명칭 등의 표시

본 장비의 외함에는 제조자명, 제조번호, 모델명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
6. 계약상대자의 책무

가. 본 물품은 신제품이어야 하며, 별첨 “규격서”에 제시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본 물품의 외관에는 유해한 흠, 변색,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.

다. 도장 및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이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, 그 표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.

라. 물품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구성품, 예비품 및 부속 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마.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, 발주처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 아울러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생략된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.

바. 물품 또는 포장 외부에는 품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.

사. 본 물품의 품명, 규격 등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,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경우,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“감독관(또는 감독)”과 사전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7. 검사의 종류 및 방법

가. 외관검사 : 전수검사를 하며 외관상 유해한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.

나. 수량검사 :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한다.

다. 성능검사 : 성능검사를 하며 동작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.

8. 시험 및 검사의 판정

가. 제반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상기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.

9. 기술지원

- 가. 계약상대자는 취급설명서 및 유지보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처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(단, 교육 시간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충분히 실시한다.)
- 나. 각 장비의 특성과 현장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고, 발주처가 장비 운용 및 관리 방법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- 다.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(가동 시간, 소모품 교체 주기 등)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.

10. 유지보수(A/S)

- 가.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본 장비의 부품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, 무상 A/S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나.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의 A/S는 유상 처리하되, 지속적인 A/S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다. 장비의 주요 부품에 동일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, 해당 장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라. 공급 물품은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.
- 마. 장비 납품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바. 물품의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·제출하여야 한다.

11. 계약내용의 해석

- 가. 계약 체결 후에는 “감독관”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계약 물품의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과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2. 시운전

계약상대자는 제품을 “발주처”에 인도한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. 이어 점검표에 따라 “감독관”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, 시운전 결과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.